

☐ 금융사기 보상(플러스사랑단체상해보험II) 관련 상세 안내

● **보상하는 손해** ※아래는 고객의 이해를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① 전화금융사기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상의 피해액의 70% 해당액을 지급함 (별첨1 참조)
- ② 메신저금융사기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상의 피해액의 70% 해당액을 지급함 (별첨2 참조)

* 단,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 약관 및 보험계약 포함)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함

▪ 용어 풀이

-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

- 메신저 금융사기(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 사기범이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금전상의 피해 :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 피해가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금전상의 피해액이란 금융거래 내역서 등으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는 고객의 이해를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함)

-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 행위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피보험자의 동거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

-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금액

☐ 금융사기 보상(플러스사랑단체상해보험II) 관련 상세 안내

● 보상 절차 및 방법

보험금은 E-mail, Fax,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아래 접수처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① 보험금 청구 → ② 구비서류 제출 → ③ 보상담당자 지정 → ④ 보상여부 검토 및 조사 → ⑤ 보험금 결정 및 결과 안내

●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후첨)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후첨)
- 사건사실 확인원 (관할경찰서)
- 경찰신고서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관할경찰서)
- 사고금액의 은행송금증 or 통장기재내역 or 거래내역서 중 택 1 (해당거래은행)
- 사고당시 통화내역 (통신사에서 발급)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보험금 수령용 통장사본 각 1부
- 전화금융사기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라 사기범 계좌를 지급 정지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송금한 계좌의 해당거래은행)
- 기타 요청서류

● 보상서류 접수/문의처

우편	E-mail	Fax	전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법인영업1부 KB스타클럽 무료보험 담당자 앞	sjh1742@kbinsure.co.kr	0505-135-1503	02-6900-3450

● 보상한도액 안내

구분	보상한도액 (인당/사고당/총 연간)	공제금액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1,000만원 한도	금전상 피해액의 30%
메신저 금융사기(메신저피싱)	1,0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03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필수 체크 항목으로 각 동의란에 체크 하십시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 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회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kbinsu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질병·상해정보처리

동의함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 면허증번호

동의함 ▶

작성일자 ▶

년

 월

 일

동일자 ▶

성명

 서명 (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상의 피해액의 70% 해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금전상의 피해란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 피해가 확정 된 경우를 말하며, 금전상의 피해액이란 금융거래 내역서등으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5.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6. 피보험자의 동거인 또는 집 지키는 사람, 가사도우미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
7.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제3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별첨1]

【사례】

※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A: 보상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보상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상의 피해액의 70% 해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라 함은 사기범이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금전상의 피해란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 피해가 확정 된 경우를 말하며, 금전상의 피해액이란 금융거래 내역서등으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 5.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6. 피보험자의 동거인 또는 집 지키는 사람, 가사도우미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
- 7.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8.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제3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별첨2]

【사례】

※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A: 보상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보상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text{만원} \times 1,000\text{만원} / (1,000\text{만원} + 1,000\text{만원})$

→ 계약B보험회사 : 500만원 지급 = $1,000\text{만원} \times 1,000\text{만원} / (1,000\text{만원} + 1,000\text{만원})$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